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87
----------	-------

발의연월일 : 2026. 1. 16.

발 의 자 : 강승규 · 김미애 · 김위상
나경원 · 김소희 · 김재섭
고동진 · 구자근 · 최보운
안철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심사 과정을 살펴보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활용 용도에 따라 7개 부처가 개별적인 전문가심사 위원회를 통해 분리 심사하고 있고,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각 부처별로 설치된 전문가심사위원회에 대하여 법률의 근거가 미비하고, 위해성심사에 관한 추가 협의 절차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인력, 시간 및 비용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부처별 위해성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모든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해 동일한 협의절차를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과도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특히, 지난 수십 년간 국내 심사과정에서 위해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비병원성 산업용 미생물과 수입 곡물 등에 대해서는 협의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환경 방출

이 필수적인 유전자변형생물체(법 제2조제4호)에 대한 위해성 협의심사에 집중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장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추가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함으로써 위해성 심사에 관한 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3항 개정 및 제7조의3 신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 방출되거나 환경 방출될 우려가 있는”을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 방출 용도의”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위해성심사위원회)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를 하기 위하여 위해성심사위원회(이하 “위해성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해성심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과학기술 관련 전문가로 위해성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위해성심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직원 및 바이오안전성위원회”를 “임직

원과 위해성심사위원회 및 바이오안전성위원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해성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위해성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① · ② (생략)	제7조의2(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심사를 하는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u>환경 방출되거나 환경 방출될 우려가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u>	③ ----- ----- ----- -----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 방출 용도의 ----- ----- ----- ----- -----.
<u><단서 신설></u>	<u>다만,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u>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u><신설></u>	제7조의3(위해성심사위원회) ①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u>

제38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u>인직원 및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u>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 4. (생략)	<u>위해성심사를 하기 위하여</u> <u>위해성심사위원회(이하 “위해성심사위원회”라 한다)</u>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u> <u>위해성심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과학기술 관련 전문가로</u> <u>위해성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u> ③ <u>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별</u> <u>위해성심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38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u>인직원과</u> <u>위해성심사위원회</u> <u>및</u> <u>바이오안전성위원회</u>----- ----- ----- ----- -----. 1. ~ 4. (현행과 같음)
---	---